

장치별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참고자료 〈전자장치〉

한국교통안전공단
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

2020.09.02.v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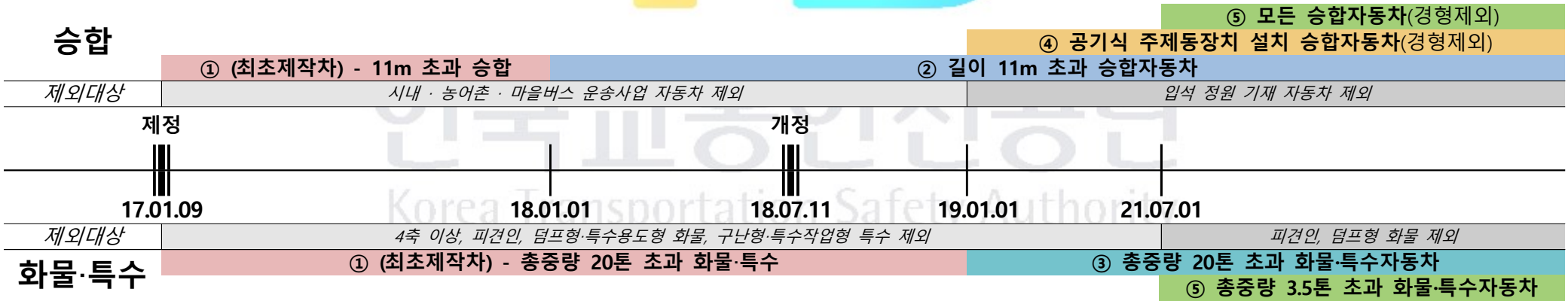
한국교통안전공단
검사기준처

	장치	적용시점	대상	비고
1	속도제한장치 <제54조 제3항>	차종별 상이	승합 - 총중량 10톤 이상 : '06.2.11 - 총중량 4.5톤 이상 : '12.8.16 - 총중량 4.5톤 이하 : '13.8.16 - 어린이 보호차 : '19.11.15 이후 제작 또는 튜닝승인 화물 - 총중량 16톤 이상 or 최대적재량 8톤 이상 : '06.2.11 - 총중량 3.5톤 초과 : '12.8.16	1.승합자동차 : 110km/h 2.차량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 : 90km/h 3.고압가스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: 90km/h 4.저속전기자동차 : 60km/h 5.초소형자동차 : 80km/h (제11조제4항)
2	운행기록장치(DTG) <제56조>	-	여객운송사업자, 화물운송사업자, 화물운송가맹사업자 (어린이 보호차 : '21.1.1~ , 기존운행차량은 '23.1.1~)	- 제외대상 :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, 경·소형 특수, 구난·특수 특수 - 튜닝으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로 감소된 경우도 제외대상 해당 - 운행기록장치 통합형 위험물운송단말도 운행기록장치로 인정
3	차로이탈경고장치 <제14조의2>	'20.2.28.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	<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기준> 승합자동차 -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(2018.01.01.~) ¹⁾ - 공기식 주제동장치 설치 승합자동차 (2019.01.01.~) ²⁾ - 모든 승합자동차 (2021.07.01.~) ²⁾ 화물·특수자동차 -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 (19.01.01.~) ¹⁾ -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 (2021.07.01.~) ²⁾ 1) '17.1.9 제정. * 제정 이후 최초제작차는 적용대상에 포함 2) '18.7.11 개정 * 대상, 기준일자 및 예외 차량 세부내용 별첨 확인	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16호에 따라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 불량 시 ⇒ 부적합 사항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[별표15] 11) 전기 및 전자장치 (2) * 검사기준: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* 검사방법: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. 다만,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설치여부 확인 ※ 일반기준 1. 나. 7)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→ 관능·서류 등으로 식별
	비상자동제동장치 <제15조의3>			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16호에 따라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 불량 시 ⇒ 부적합 사항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[별표15] 11) 전기 및 전자장치 (2) * 검사기준: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* 검사방법: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※ 일반기준 1. 나. 7)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→ 관능·서류 등으로 식별
3-1	차로이탈경고장치 <교통안전법 제55조의2>		-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자동차 [시내(일반형)·농어촌·마을버스 운송사업용은 제외] -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·특수 자동차	- 제외대상 : 덤프형 화물, 피견인 자동차,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* 시내(일반)·농어촌·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제원표 상 입석 정원이 없더라도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제외대상 (시내좌석은 설치대상에 해당됨 - 세부내용 및 구분방법은 별첨 참고)

[별첨 1] 법령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대상 및 제외대상

1.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'차로이탈경고장치' 및 '비상자동제동장치' 의무 설치 대상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) 및 제15조의3(비상자동제동장치)	
<17.1.9. 제정> ○ (설치대상)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 자동차 ○ (제외대상) - 4축 이상 자동차 - 피견인 자동차 - 덤프형·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-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 운송사업 자동차 ○ (시행일자) -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된 형식의 자동차(최초제작차*)는 바로 적용 ① - 규칙 시행 당시 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(부칙 제4조) •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: 2018년 1월 1일 ② •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 : 2019년 1월 1일 ③	<18.7.11. 개정> ○ (설치대상) 승합자동차(경형승합 제외) 및 차량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 ○ (제외대상) - 피견인 자동차 - 덤프형 화물자동차 -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-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의 곤란 또는 불필요함을 인정한 자동차 ○ (시행일자) -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: 2019년 1월 1일 ④ - 가목외의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: 2021년 7월 1일 ⑤
* 최초제작차 : 동일차종 없이 새로운 차대·차체로 제작된 자동차로서 최초로 신고 된 자동차 (제원관리번호 9자리 또는 형식승인번호 6자리 신규 부여) * 동일차종 : 차명이 같고 차대 및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 - 자기인증 차량 : 제원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 (예 : A08-1-00123-0001-0002) - 형식승인 차량 : 형식승인번호 6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 (예 : 1-00456-0003-0004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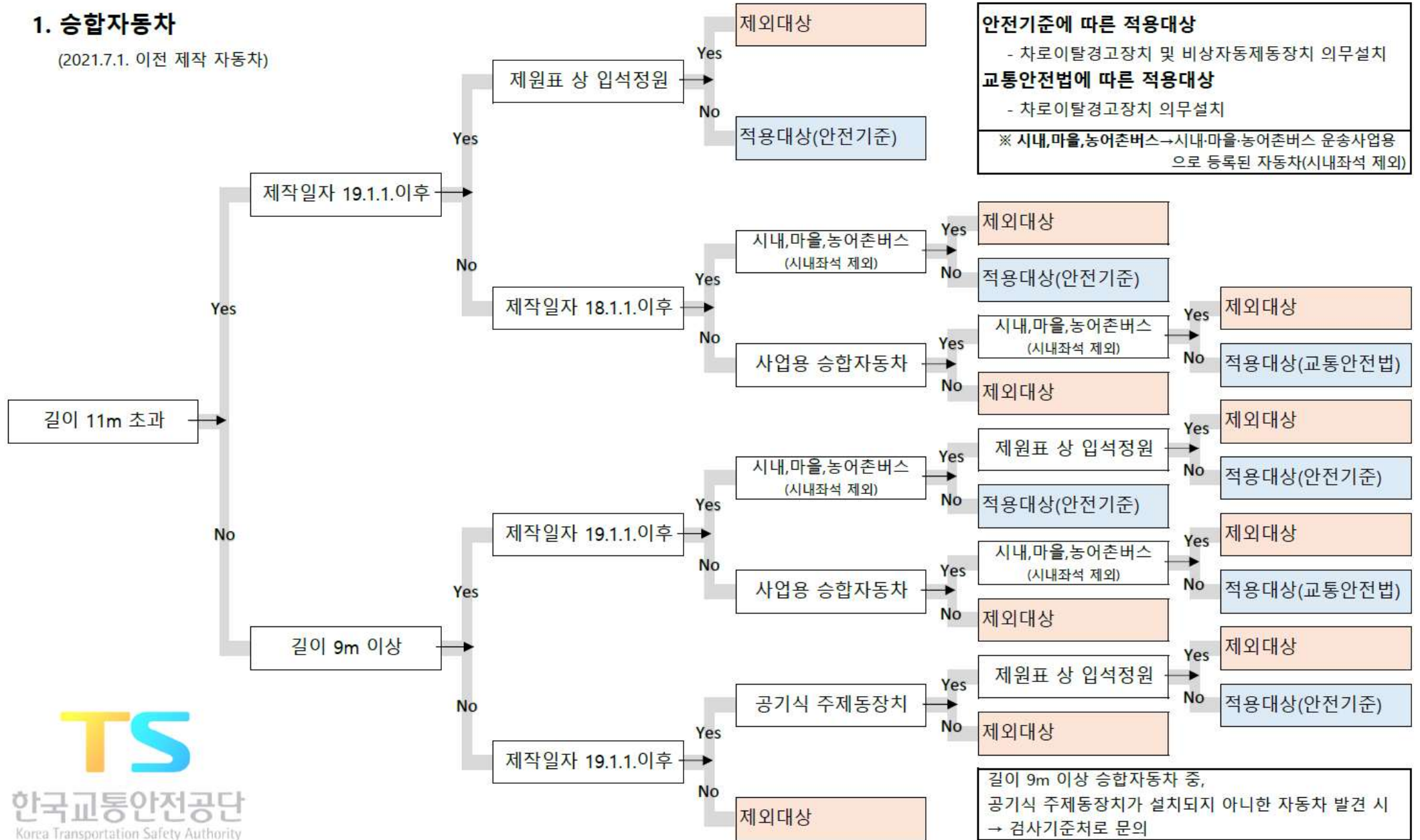


2.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'차로이탈경고장치' 의무 설치 대상 <2017.1.17. 제정, 2017.6.17. 시행>

○ (설치대상) - 길이 9m 이상의 <u>사업용</u>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<u>사업용</u> 화물·특수 자동차 (연식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) ※ 기존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, 2020년 1월 1일부터 미장착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 ○ (제외대상) - 덤프형 화물자동차 - 피견인 자동차 -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(시내일반·농어촌·마을버스) -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의 곤란 또는 불필요함을 인정한 자동차	
※ 시내(일반형)·농어촌·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(시내좌석·시외·전세버스 등은 설치대상)	中 19.1.1. 이전 제작 → 제원표 상 입석정원의 유·무와 관계없이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설치대상에서 제외 19.1.1. 이후 제작 → 제원표 상 입석정원이 없는 경우, 안전기준에 따른 의무설치대상에 해당

1. 승합자동차

(2021.7.1. 이전 제작 자동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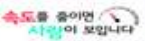
2. 화물·특수자동차(총중량 20톤 초과)

(2021.7.1. 이전 제작 자동차)



안전기준에 따른 적용대상
-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
교통안전법에 따른 적용대상
-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설치

※ 2021년7월1일 이후 제작되는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대상(덤프형 화물·피견인 자동차 제외)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표일시	2019. 1. 21.(월) / 총 5매(본문 3, 붙임 2)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 자	- 과장 박정수, 사무관 홍철, 주무관 홍성욱 ☎ (044) 201-3863, 3864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21일(월) 오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인터넷은 1.2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원바다·렉카차·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...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

- 올해부터 4축 이상(차축 4개 이상(가변축 포함)), 원바다(특수용도형), 렉카차(구난형), 이삿짐 사다리차(특수작업형)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버스,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(LDWS: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)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.

< 의무화 대상 확대 차량 >

구분	기존	확대 (기존 포함)	
		차종별	세부 용도별
화물차	3축 이하	4축 이상	- 차축 4개 이상(가변축 포함) - 원바다, 냉동탑차, 크레인자동차
	일반형(카고트럭), 벤형	특수용도형	유압적하기 자동차, 활어운송용 자동차
특수차	3축 이하	4축 이상	- 차축 4개 이상(가변축 포함) - 구난형
	견인형(트랙터)	특수작업형	- 렉카차 - 이삿짐 사다리차, 고소작업차

-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 등 7.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(최대 한도 40만 원)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

○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체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.

○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회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(교통안전법 시행규칙, '19. 1. 18. 시행)하여 20톤 이상 화물·특수 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,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.5만대로 확대되었다. (기존 7.5만대 + 확대 8만대)

• 4축 이상 자동차,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,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
•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

□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수사업자와 위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○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,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'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'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.

•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
□ 한편,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까지만 진행된다.

○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'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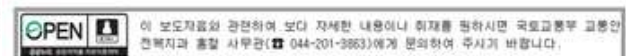
○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.

□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사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, 행사객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,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사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,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.



참고 대형 사업용 차량 유형별 분류

□ 화물차

유형	정의	주요 차량	비고
일반형	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	 카고트럭	기존 대상
덤프형	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	 덤프트럭	제외
편형	차통구조의 열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	 편형 트럭	기존 대상
특수용도형	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,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	 사료운반트럭  왕비디트럭	신규 확대

□ 특수차

유형	정의	주요 차량	비고
견인형	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	 트랙터	기존 대상
구난형	고장·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·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	 렉카	신규 확대
특수작업형	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	 고소작업차	신규 확대

□ 승합차

구분	좌석형	입석형
정의	별도 입석 공간이 없는 승합차	입석 기준에 따라 입석 연석이 있는 승합차 ·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7
주요 차량	광역급행형·적량좌석형·좌석형 시내버스, 시외버스 등	일반형 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 등
사진		